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불일치한 내용은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된 내용은 삭제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 띄어쓰기, 잘못 표기된 용어 수정
-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내용 추가 (안 제2조제2항제6호)
- 상위법 개정사항 및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 정비(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안 제6조의2, 안 별표 1 서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및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 삭제(안 제7조~제12조, 안 별지 제1호~제6호 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중복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으며,
 - 안 제1조에서는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 안 제2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의 제목을 수정하고 제1항에 상위법 근거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의 제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조문일부를 수정하였고,
 - 안 제6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 안 제7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하고 있어 조문을 수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 제8조~제12조의 관련 내용과 안 별지 제1호~제6호 서식은 삭제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규정이나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보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08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에 있어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추가(안 제2조)
-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의 정비
(안 제6조의2 ~ 안 제12조, 안 별지 제1호 ~ 6호 서식)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령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9.28. ~ 10.1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로,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관할구역안의”를 관할구역의 쓰레기줄이기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 중 제목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법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자원순환기본 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목 “장려금등의 지급”을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본문을 “구청장은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하단 중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 “구협의회”를 “협의회”로 하며,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의2는 삭제한다.

제7조 제1항에서 3항까지를 삭제하고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한다.

제8조는 삭제한다.

제9조는 삭제한다.

제10조는 삭제한다.

제11조는 삭제한다.

제12조는 삭제한다.

별표 1은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품의포장방법 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u>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u></p> <p>②<u>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관할구역의 쓰레기 줄이기와 --.</u></p> <p>②----- <u>제1항에 따라</u> -----</p>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 5. (생략)

〈신설〉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삭제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추진 협의회) 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
-----.

②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41조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①구청장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촉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②협의회-----
----- 범위-----
-----.

〈삭 제〉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진술)①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삭제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 제〉

〈삭 제〉

〈삭 제〉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의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13조(규칙제정) (생략)

〈삭제〉

〈삭제〉

제1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